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0.

발 의 자 : 김 건 · 김석기 · 김민전
김기현 · 한지아 · 김성원
김태호 · 최보윤 · 이양수
이소희 · 진종오 · 김승수
이헌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·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

1항 및 제5조제2항).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속가능한 발전”을 “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”을 “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① 국제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, 여성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, 성평등 실현, <u>지속가능한 발전</u>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국가등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<u>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</u>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국가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